

「社會科學研究」 투고규정 · 편집규정 · 심사규정

2002. 10. 1 제정
 2006. 8. 1 개정
 2007. 7. 1 개정
 2010. 3. 1 개정
 2012. 12. 1 개정
 2015. 3. 1 개정
 2017. 6. 1 개정
 2018. 8. 1 개정
 2020. 1. 2 개정

| |
|-------------|
| 社會科學研究 투고규정 |
|-------------|

가. 원고제출

1.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에 당해 연도 권(卷) 제1호·제2호·제3호·제4호가 발행되는 「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제출자격 : 원고 제출자격은 사회과학분야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요건에 준하는 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제출방법 : 원고는 제출 마감일까지 사회과학연구원 전자메일(ris@dongguk.edu)로 송부하거나 원본 1부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 파일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 1개를 동봉하여 사회과학연구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연도 권의 제1호를 위해서는 1월 20일, 제2호를 위해서는 4월 20일, 제3호를 위해서는 7월 20일, 제4호를 위해서는 10월 20일까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신청서’,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쓴 것이어야 하며, 『사회과학연구』의 원고작성지침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5. 사회과학연구원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 및 이동식 저장 장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작성지침

1. 원고분량 : ① 기획논문 : 200자 원고지로 140매 내외
 ② 일반논문 : 200자 원고지로 120매 내외
2. 원고는 제목, 제출자, 목차, 본문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표> 및 <그림> 등은 본문 내에 순서에 따라 기입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목은 로마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한다.
 I. 1. 1) (1) ① 가)
 단, 더 세부적인 항목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서 임의로

선택한다.

4. 본문 작성이 완료된 위치에 본문과 구분하여 <참고문헌>을 기재하되 참고문헌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5. 국문요약은 본문의 시작 전에 편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하고, 영문 요약(Abstract)은 논문 말미에 첨부하되 영문제목과 저자의 영문성명을 포함하여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6. 본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漢字를 쓰도록 하며, 기타의 외국어 표기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괄호로 표기한다.
7. 본문의 내용과 관계되는 저술을 소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 또는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할 때는 본문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은 외국어의 경우 原語를 그대로 표기하며, 한글 또는 국한문 혼용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원고작성범례를 참조한다.
8. <표> 및 <그림>의 경우 그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본문주와 같다. 출처와 본문주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를 따른다.
9.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우측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다. 원고작성범례

I. 논문형식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논문요약(국문 및 영문)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 영문), 저자이름(국,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제일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로 본다.
5. 원고는 4부를 작성하여 이동식 저장장치 및 논문기고신청서(별지 서식)와 함께『사회과학연구』편집위원회로 우송한다.
6. 국·영문 주제어(Key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7. 외래용어 및 외국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용어를 부기한다. 외국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에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II. 원고작성시 집필요령

[본문주]

1.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하여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page 표기는 출판년도 다음에 곧바로 콜론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숫자를 표기한다. 또한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저자, 연도, 페이지 순)
 - 이황우(1999: 30)에 의하면...
 - 김보환(1999: 31)과 정진환(1992: 32)의 연구에서도...
 - Stevens(1998: 217-220)의 주장을 수정하여...
 - 이상현(1991: 33)과 Berg(1992: 34)를 들 수 있다.
 -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충남, 1999; 이종범 등, 1990; Berg, 1992).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Green & Taylor, 1988: 205; Eisenberg, et. al., 1973)
 - ...라고 볼 수 있다(「경찰법」 § 11④; 김규식, 1999; 경찰청, 1994: 500).
 - 3)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 「경찰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 4) 특별한 저자가 없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 경찰청, 2007: 36.
 - 5)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et al.)”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 ...이다(이황우 · 조병인 · 최응렬, 2006: 57).
 - ...이다(이황우 외, 2006: 82)
 - 6) 연도가 같은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 인용될 경우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a: 50).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b: 50).
 - 7)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 최응렬, 2005: 33
 - 8)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 지명, 발행 ○○년 ○○월 ○○일(월간지의 경우 발행 ○○년 ○○월), page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있기를 기대한다(「중앙일보」, 2005. 4. 26: 33).
 - 9)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 제작자,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 검색일자 순으로 한다.
 - ...이다(홍길동.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http://ks.ac.kr/2007.10.20>).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 번호를 붙이고(예) ...하였다.), 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 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의 순으로 제시하고, 후자는 알파벳의 순으로 제시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저술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5.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발표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 단행본인 경우[저자명.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항]
 - 이운호. (2005a). 「범죄학개론」, 박영사
 - 이운호. (2005b). 「교정학개론」, 박영사
 -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5a).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일반논문인 경우[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수록서명」 및 발행제호, 페이지]
 - 주희중. (1999). “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87-121.
 -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 3) 학위논문인 경우[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성격」, 수여기관명]
 - 정진환. (1979). “한국경찰교육제도의 발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4)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김창·안영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형태 비교”, 박동·김광웅 (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법문사.
 - 5) 기타 저자가 없는 경우
 - 경찰청. (1993). 「1992 경찰사료연감」.
 - 경찰청. (2007). 「경찰백서」.
 - 6)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 최응렬. (2005).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중앙일보」, 4. 26: 33.
 - 7)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 지명. 발행 ○○년 ○○월 ○○일(일간지의 경우 발행 ○○년 ○○월), page를 기재한다.
 - 「중앙일보」. (2005). 4. 26: 33.
 - 8)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저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 Weisburd, David and Braga, Anthony A. (eds.). (2006).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9)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Journal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 Powell, Dennis D. (1990). “A Study of Police Discretion in Six Southern Citi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7(1): 1-7.
 - 10) 번역서의 경우
 - Hirschi, Travis.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New York: Free Press, 김인필 (역). (1995).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박영사.
 - 베버(M. Weber). (1990). 「유교와 도교」, 이상을 (역), 문예출판사.
 - 클레그·히긴스·스파이비(S. 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195-210, 역사비평사.
 - Weber, Max. (1951).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New York: Free Press.

11)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 검색일자 순으로 한다.

○ ...이다(홍길동,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http://ks.ac.kr> /2007. 10. 20).

[기 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 가)의 순서를 따른다.

I. 로마숫자(글자크기: 12 진하게, 중앙으로)

1. 아라비아 숫자(글자크기: 10 진하게(이하 같음), 2칸 들여쓰기)

1) 한글(4칸 들여쓰기)

(1) 괄호숫자(6칸 들여쓰기)

① 동그라미 숫자(8칸 들여쓰기)

가) 반괄호한글(9칸 들여쓰기)

2. 투고논문의 규격과 양식

용지: A4용지

머리말 10, 꼬리말 0, 위쪽 46, 아래쪽 46, 오른쪽 45, 왼쪽 45

줄 간격 180%

본문 글자크기 10point.

글씨체: 바탕체

3.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 1>, <그림 1>) 표와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설명주는 “주 : 1), 2), 3)”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4.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과 같이 표기한다.

5.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6.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주,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7.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社會科學研究 편집규정

라. 논문집 발행

1. (발행회수) 「사회과학연구」의 발행은 연 4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시) 「사회과학연구」는 매년 당해 연도 권 제1호는 3월 20일, 제2호는 6월 20일, 제3호는 9월 20일, 제4호는 12월 20일에 발행한다.
3. (원고마감)
 - 1) 각 년도의 제1호에 논문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사회과학 연구원에 제출하며, 제2호에 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4월 20일까지, 제3호에 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7월 20일까지, 제4호에 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10월 20일까지 사회과학연구원에 제출한다(제출방식은 「사회과학연구」 투고규정 참조).
 - 2)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된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원고분량) 「사회과학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기획논문은 200字 원고지로 140매 내외, 일반논문은 200字 원고지로 120매 내외여야 한다. 제출원고가 현저하게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필자에게 첨삭을 요청할 수 있다. 필자가 첨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언어) 제출원고는 원칙적으로 우리말(한글)로 쓰여진 것이어야 한다.
6. (심사) 제출원고는 반드시 「사회과학연구」의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판정받는다(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연구」 심사규정 참조).
7. (편집)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책임 하에 「사회과학연구」의 편집형태에 맞춰 일괄 편집한다.
8. (교정) 게재 원고의 교정은 사회과학연구원이 담당한다. 단, 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의 교정을 허용할 수 있다.

마. 편집위원회

1. (구성) 편집위원회는 산하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정치외교학, 북한학, 행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경제학, 국제통상학, 경찰행정학, 식품산업관리학 등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교내외 교수들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2. (목적)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를 내실 있게 발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임무)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특집 및 기획의 계획과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 그리고 「사회과학연구」와 관련된 여타의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
 - 1) 편집위원회 회의는 매년 원고제출마감 및 심사완료에 맞춰 각 4회씩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히 결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과 편집 그리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바.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2. 10. 1)
사.

아.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6. 8. 1)

자.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7. 7. 1)

차.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3. 1)

카.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5. 3. 1)

타.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7. 6. 1)

파.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8. 8. 1)